

감호위탁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방안*

이 수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법학박사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소년범죄의 변화와 보호처분 현황 - 감호위탁처분을 중심으로 -
- III. 감호위탁제도의 문제점
- IV. 감호위탁제도의 개선방안
- V. 결론

I. 들어가는 말

고전학파에서부터 시작된 범죄의 원인에 관한 연구와 최근의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범죄자가 처음부터 범죄자로서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결정론적인 관점과 범죄자의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결정론의 관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범죄는 전적으로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범죄자의 완전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범죄는 행위자의 소질과 특성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¹⁾ 범죄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과 그러한 요인의 영향의 정도를 개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형사정책의

* 투고일 : 2011.04.25, 심사완료일 : 2011.06.21, 게재확정일 : 2011.06.24

1) Harry E. Allen, Clifford E Simonsen, Edward J. Latessa, "Corrections in America : an introduction", 2003, 10th ed.. p.254.

분야에서 범죄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경우 범죄적 환경에 처하였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으며,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자극을 받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소년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래서 소년기의 범죄행위 내지 비행은 소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하게 형성된 인격의 결과가 환경적 요인과 결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사회가 이들에게 성숙되고 건전하지 못한 환경을 배양하였고 여기에 미성숙한 소년들이 악성감염 내지는 동기화되어 범죄에 빠질 수 밖에는 없었으므로 소년의 범죄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사회가 보호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³⁾ 즉 소년 비행자는 육체적 정신적 미성숙이라는 생물학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환경적 요인이 결합한 결과이며, 범죄적 결과에 대하여 그들에게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을 묻기에 앞서 사회적 책임을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과 소년기의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며, 또한 아직까지는 고질적이고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악성감염의 상황까지는 진전이 되지 않았기에 이들을 처벌적 관점에서 다루기보다는 보호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소년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사회의 범죄적 비용을 절약하는데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하에서는 소년보호처분 중 소년원제도가 지니고 있는 낙인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으며, 다른 보호처분제도에 비하여 그 적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호위탁⁴⁾(소년법 -이하 법- 제32조 제1항 제6호)제도의 실태와 법률적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감호위탁제도가 소년의 재사회화 내지는 소년교정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Philip L. Reichel, "Corrections ; Philosophies, Practices, and Procedures", 2001, 2nd ed., p.435.

3)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2002, 410면 이하;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2, 434면 이하.

4) 소년보호처분 중 제1호 처분의 경우 소년을 부모 등의 보호감독 하에 맡기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제2호~제5호 처분의 경우 성인범에게도 적용이 되고 많은 연구의 성과도 발표 되어 있으며, 제8호~제10호 처분은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자칫 낙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제7호 처분의 경우 실무상의 적용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 비해 제6호 처분의 경우 다른 처분에 비하여 적용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낙인효과와 측면과 프로그램이 운용 방법 등을 체계화 한다면 소년보호에 가장 적절한 처분이라 생각을 한다.

II. 소년범죄의 변화와 보호처분 현황 - 감호위탁처분을 중심으로 -

1. 소년범죄의 변화

소년범죄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제2호에 정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의한 촉법 행위를 말한다. 동조 제3호에 정한 우범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6.22.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법률 제8722호는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상한연령 20세에서 19세로 낮췄고,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췄다.⁶⁾ 과거에 비하여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는 흉포화 · 잔인화 · 저연령화 · 성인범죄의 모방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언론 보도의 내용을 통하여 보도된 사실에서 소년범죄의 변화양상을 보기로 한다.

(1) (사례1) 2011년 2월 22일 신모(16)군 등 6명은 대전역 부근에서 지모(13)군을 주먹과 발, 각목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았다. 지군은 3차례나 실신했지만, 이들은 실신한 지군의 허벅지를 담뱃불로 지저 깨웠다. 이들은 겨우 깨어난 지군의 머리를 발로 짓밟았다. 지군은 두개골 파열로 숨졌다. 신군 등은 전원 구속기소되었다. 이 사건 범행 8일 전 경찰은 서울 영등포의 사우나 수면실에서 현금 19만원을 훔친 혐의로 신군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인 신군을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8일 만에 신군은 잔인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신군은 앞서 폭력·절도 혐의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소년보호감호시설에 위탁된 전력도 있었다.⁷⁾

(2) (사례2) 청주 시내의 한 PC방에서 현금 33만원을 절도한 용의자가 잡혔다. 그는 긴 가발과 짙은 화장으로 감쪽같이 여자로 분장해 수사에 혼선을 준 '여장'

5)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6) 2008.6.22.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법률 제8722호는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상한연령 20세에서 19세로 낮췄고, 촉법 소년의 하한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췄다.

7) chosun.com, 사건 인사이트, 2011.4.4. 인터넷 기사.

남자 절도범' 임명호(가명, 18)군이었다. 수사를 맡았던 한 경찰은 “경찰생활 31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여장을 했다고 믿기엔 어딘가 수상했다. 명호는 지난 해 4월에도 범죄를 저질러 23일 동안 여자 구치소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당시 지문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여장으로 두 번이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명호는 가출 청소년이었다.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에게 접근해 방심한 틈을 타 돈을 훔치는 범죄를 반복하며 지내왔다.⁸⁾

(3) (사례3)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킨 A(16·여)양 등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 앞 벤치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B(12·여)양과 C(12·여)양을 상대로 현금 5만원과 휴대전화 2대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B양을 성북구 미아동 한 모텔에 감금한 채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8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여중생을 유인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을 한 A(15)군 등 2명이 구속됐다. A군 등은 14일 새벽 3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중생 C(14)양을 불러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학교 뒷마당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⁹⁾

(4) (사례4) 16살 정모 군 등 6명은 중학생 지 모 군 등 3명을 상가 옥상으로 끌고 갔다. 주먹과 둔기로 지 군 등을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리를 떴으며, 둔기에 머리를 맞은 지군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정 군 등은 근처 다리 밑에서 다른 학생 3명에게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붙잡혔으며, 유홍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는가 하면 고교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등 청소년 범죄는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¹⁰⁾

이러한 소년범죄의 양상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소년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소년범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선도·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법제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8)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2001.3.11. 방송.

9) 뉴시스, 2011.2.26. 인터넷 기사.

10) YTN 인터넷 기사, 2011.2.23.

소년법에 대한 미온적 처리가 오히려 소년법의 재범을 부추기고, 더 큰 범죄의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를 한다면 형사처분은 위하력과 형벌의 엄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은 처분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하고 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소년의 보호의 취지에 더 적합하리라 본다.

2. 보호처분의 현황

소년법이 1988년 12월 31일 개정된 이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등 위탁(1호), 단기보호관찰(2호), 보호관찰(3호),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의 위탁(4호), 병원·요양소위탁(5호), 단기소년원송치(6호), 소년원송치(7호) 등의 7가지 처분이 있었으나 실무상 5호 처분의 활용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1호 처분에는 2호 또는 3호 처분을 병합할 수 있었다. 그 후 2007.12.21. 소년법의 전면 개정으로 현행 보호관찰에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2·3호)으로 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쇼크구금, 8호)를 신설하였으며, 단기 보호관찰기간을 연장(6개월→1년, 4호) 하였다. 그리고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으로 소년원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보호자교육, 외출제한명령 등을 도입하여 보호처분 등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¹¹⁾ 이 중에서 특히 2000년 이후 감호위탁처분의 현황을 보면, 같은 시기 최다처분에 해당하는 제2호 처분(단기보호관찰)에 비하면 7.7% 수준에 그치지만, 같은 시기 최소처분에 해당하는 제5호 처분과 비교할 때에는 거의 7,950%(약 80배) 수준에 이른다(표 참조).

1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265면; 박상열, 6호 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현황과 문제점,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1, 1면 이하.

[보호처분 현황]¹²⁾

보호처분 년도	제2호 단기보호관찰	제5호 병원요양소위탁	제6호 감호위탁
2007	10,425	27	478
2006	7,013	10	462
2005	6,906	5	577
2004	6,642	0	547
2003	7,388	0	534
2002	7,873	5	879
2001	8,818	7	717
2000	10,783	10	896
합계	65,848	64	5,090

- 1) 6호 처분(구 4호 처분) 단기보호관찰
- 2) 4호 처분(구 2호 처분) 단기보호관찰
- 3) 7호 처분(구 제5호 처분) 병원요양소위탁

이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단기보호관찰제도 등이 비교적 손쉬운 보호처분으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반면, 제5호 처분(병원요양소위탁)의 경우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절차상의 이유로 인하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5호 처분(병원요양소위탁)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감호위탁처분제도의 운용과 그 기능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감호위탁처분의 경우 사회봉사, 수강명령, 단기보호관찰에 비하여는 절대적으로 활용이 낮은 수준이지만 소년원송치(제8호, 제9호, 제10호), 병원요양소위탁처분(제7호)에 비하여 낙인효과를 감소시키고, 절차와 관리상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활용이 꾸준한 추세에 있다.¹³⁾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감호위탁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는 아동복지법에

1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265면 이하.

13) 6호 처분은 사회내처우가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면 보호소년의 양육 또는 교육할 가정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오히려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제도의 유효성이 있다고 한다(박달현, 현행 소년법상 소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36호, 2007, 159면 이하); 감호위탁 처분의 유용성에 관해서는 박상열, 10면 이하 참조.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복지법(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상 아동복지시설에는 생활시설기능을 담당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¹⁴⁾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종합시설과 이용기능을 담당하는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가 있다.¹⁵⁾

또한, 소년법에 따른 ‘그 밖의 보호시설’에는 관할 법원별로 수탁계약을 맺어 제6조처분의 아동을 위탁수감하고 있는데, 법원별 수탁기관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인 경우와 법원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동을 수탁하는 아동치료시설이 아닌 시설이 공존하고 있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중에는 감호 위탁된 소년과 일반요보호아동

14)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현재 살레시오 근로청소년센터(서울), 샘터학교(부산), 성바오로 청소년의집(경북), 호광교회 직업보도원(대전), 아들의 집(경기도), 나사로 청소년의집(경기도), 해뜨는 마을(경기도), 로렘 청소년학교(충북), 희망 샘학교(전북), 푸른 동산(전남) 동해 청소년학교(경남) 총 11시설 515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 중 2009년 12월 현재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서울)이 80명, 호광교회 직업보도원(대전)이 150명, 희망 샘학교(전북)가 70으로 최대 인원을 수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들은 20~30명 내외가 수용되어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15) 아동양육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관(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을 함께 수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호 위탁된 아동만을 전담하는 시설도 있다. 즉, 소년법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는 경우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서 감호 위탁되는 경우도 있는데,¹⁶⁾ 이는 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관할법원과 소년의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교도소, 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와는 달리 아동 보호시설의 전부가 개인 시설이거나 법인시설로 되어 있으며, 남녀혼용수용, 남자전용, 여자전용 등 수용방법도 다양하며, 각 시설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또한 다종다양¹⁷⁾함에 반하여 그 내용의 실질이 당초 법원이 소년에 대한 교정교화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연령, 범죄성향, 범죄원인, 개인적 특성이 상이한 소년에 대하여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도 있다.

Ⅲ. 감호위탁제도의 문제점

1. 보호처분 과정의 일관성 유지문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은 입건 - 경찰수사 - 송치 - 검찰수사 - 공소제기 공판 - 형선고 - 확정 - 형벌의 집행이라는 형식적이고 고정화된 절차를 거치며, 각 단계별로 용어 역시 피의자, 피고인, 체포, 구속, 증거법칙, 형벌 등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나 보호사건의 경우 소년에 대한 처벌의 관점보다는 보호적 관점에서 사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사처분에서 사용되는 엄격한 의미에서

16) 국회입법조사처,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장조사보고서, 2010.11.15, 20면 이하.

17) 아들의 집[주변정리, 아침운동, 경건의 시간, 자율교육, 종이접기, 자치회의, 도덕, 국어, 과학, 채플, 수학, 영어, 사회국사, 특별활동, 예배, 성경공부, 리본공예, 미용 등], 효광교회직업보도원[특강, 철학세미나, 약물남용예방, 정규집단교육, 사물반, 검도반, 한자반, 음악반, 서예반, 용접, 정비, 컴퓨터, 미용 등], 희망생학교[국어, 영어, 수학, 독서, 산수, 노래방, 인터넷, 십자수, 종이접기, 통기타, 자유놀이, 심리상담, 요리, 공목, 미용 등], 푸른동산[독서, 영어, 대화, 명상, 수학, 예절, 생활, 논문, 생활경제, 영화감상, 음악 등] 등으로 전체 시설별 공통되거나 체계적인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각 시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국회입법조사처, 27면 이하 참조).

의 절차준수는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편이다. 즉, 소년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결정여부를 1차적으로 검사선의주의, 2차적으로 법원선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소년의 보호에 가장 실질적이고 유효한 절차를 해당 검사와 법관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즉,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급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가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2항). 또한,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이처럼 소년에게 가해지는 보호처분의 과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 구조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만 절차와 제재수단의 완화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형벌집행의 과정은 국가의 전면적인 통제와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으며, 법을 집행 담당자 역시 국가 공무원이 신분을 취득하고 있어 형 집행 과정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시설별 수용자들이 처우에 있어 불평등한 취급을 받거나 차별적 취급을 받는 사례는 제도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형벌 선고 당시 법관의 양형의 의도를 행형의 과정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가 형벌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형의 적정성을 감시감독을 하기 위한 판사와 검사에 의한 시찰제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와 법무부장관 등에 의한 청원제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등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감호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 개인과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¹⁸⁾ 또한, 해당 법원과 시설이 위탁계약을 통하여 감호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호위탁을 실시하는 담당자 역시 민간기관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감호위탁 즉, 보호처분 역시 국가의 형벌권과 유사한 공권력의 작용이며, 이러한 공권력의 작용을 법률적으로 아무런 자격 제한 없는 일반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담당을 하는 것에 대한 법률유보가 마련이 되지 않다. 또한, 각 시설별로 통일되지

18) 국회입법조사처, 17면 이하 참조.

않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로 인한 동일한 감호위탁 처분 대상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차별 취급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내재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시설별 감호위탁 집행과정에 대한 세부적이고 통일된 규정이 없어 감호위탁처분을 결정한 법관의 의도가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시설별로 임의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감시감독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법관의 처분결정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2. 소년법과 아동복지법상의 연령의 불일치로 인한 차별 문제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소년법 제1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2조). 이에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촉법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우범소년)이 있다. 그런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자격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 경우 감호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법에 의할 때,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법과 아동복지법 간의 관련규정에 대한 교차검토 내지는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가 하지 못한 입법의 실수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8세 이상의 소년이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될 수 없다는 점은 18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이다.

3. 시설 내 과학적 분류와 개별처우원칙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성장환경과 성격, 범죄의 성향에 따라 치료와 감호의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각 시설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시설 내에서도 대상자의 속성별로 구분된 개별적인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의 수탁 시설들의 경우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한 1차원적인 분류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으나, 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 등에서는 법률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행형시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분류처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제도의 미비는 실질적으로 치료보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연령과 성향 등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혼거형태의 집단 교육방식은 오히려 대상자들 상호간 악성감염의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시설의 교육방식의 내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짜여진 것이 아닐 뿐더러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취미교육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위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효적절한 처우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¹⁹⁾

4. 처분주체와 관리주체의 불일치문제

소년보호 사건에서 소년에 대한 처분의 최종 결정권자는 법관이다. 그러나 처분의 집행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소년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 감호위탁 처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의 교정은 법무부에서 담당을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복지시설에는 보호처분을 부과 받은 소년과 보호처분의 부과 받지 않은 소년이 혼재되어 있으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소년 지원시설 등 목적에 따른 시설이 다양하여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또한 관리의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처분 아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 위탁한다는 논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²⁰⁾, 실제는 보호처분 따로 집행 따로 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법관이 감호위탁 처분결정의 의도가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처분결정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교정의 효과가 법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년에 대한 교정교화가 실패하여 재

19) 국회입법조사처, 28면 이하 참조.

20) 국회입법조사처, 21면 이하 참조.

범의 길로 들어섰을 때, 재범에 대한 책임소재 내지는 원인의 규명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²¹⁾

5. 보호처분 종류 선택을 위한 과학적 분류심사의 문제점

소년법 제18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소년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소년법 제49조의 2에 따라 소년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그 밖에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분류심사의 목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동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²²⁾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 등의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도 함께 실시하는 등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²³⁾

그러나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적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의 기관에

21) 같은 취지로, 조규범, 소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수탁기관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2008, 11면 이하; 염기창, 소녀보호처분의 실질적 강화방안,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 자료집(2), 서울가정법원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 2005, 834면 참조.

22) 이춘화,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보호(통권 제16호), 2004, 23면.

2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461면 이하.

불과하여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와 지방법원 소년부 12개 기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²⁴⁾ 즉,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처우를 위해 전문적인 조사와 분류심사를 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력과 시설에서 격증하는 소년범에 대한 분류심사는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진행되기가 어려우며,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대행 소년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상담조사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이동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 문제도 있다.²⁵⁾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업무의 능률이 저하되고 그 결과 정확하고 정밀한 소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조사결과가 질적인 저하문제가 발생할 수 우려가 있다. 실제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에 대하여 판사에게 건의하는 처분에 대한 합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IV. 감호위탁제도의 개선방안

1. 소년법과 아동복지법의 입목목적의 모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중략)...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즉, 이 두 법의 공통점 내지는 유사점이라고 한다면 보호대상자의 연령대가 비슷하다는 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피해자로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의해 수용되는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24) 2008년 12월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설립1977.4.30. 현재 운영 중) 1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산, 대구 등 7개 지역은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부산소년분류심사원(설립1984.2.29. 폐지2007.7.23.), 광주소년분류심사원(설립1991.8.1. 폐지2007.7.23.), 대구소년분류심사원(설립1978.11.15. 폐지2005.8.15.), 대전소년분류심사원(설립1982.10.21. 폐지2004.1.1.).

25) 국회입법조사처, 39면 이하 참조.

26) 국회입법조사처, 40면.

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되고 있는 아동(학대받는 아동)이다(아동복지법 제2조). 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이 그 대상이다(소년법 제4조).

즉, 두 법에 의해 보호감독 되고 있는 대상자들을 구체적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은 사회와 보호감독자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공격과 가해를 받고 있는 피해아동임에 반하며,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년은 범죄를 범하거나 범할 우려 있는 즉 타인을 향하여 공격과 가해를 가하는 가해소년이다. 결국, 아동복지법은 '피해자'로서의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며, 소년법은 '가해자'로서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이렇듯 두 법의 제정목적은 처음부터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등을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 시설로써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의 상호 충돌 내지는 모순으로 인해 법의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목적과 방법론상의 부조화는 요보호소년에 대한 보호는 물론이고 범죄소년에 대한 교정의 효과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로서의 아동과 '가해자'로서의 소년 누구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다시 전가될 위험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년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시설로서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등을 소년법에서 제외를 하거나 아동복지법을 소년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범죄소년 처우계획 수립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범죄소년에 대한 교정의 효과와 보호처분과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 범죄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

램 개발과 처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대다수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의 취지대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소년법상 범죄소년의 교정과 반사회적 성격의 제거라는 관점에서 아동복지시설을 평가한다면 분리수용, 교화개선프로그램의 내용, 물리적인 시설과 환경, 악성감염의 문제 등 많은 부분들이 지적될 수밖에 없다. 즉, 현재의 수탁기관들이 성별과 연령 등 최소한의 분류기준에 의해서만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정의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²⁷⁾

이는 아동복지시설에 문제라고 보기에 앞서 입법과정에서 소년보호시설의 부재 내지는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특히 감호위탁제도를 사회내 처우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운영을 할 경우 자칫 소년원의 변형된 모습, 교도소의 연장 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감호 위탁된 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외부위탁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스템과 사회 내 처우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시설에 대하여 분류수용 기준과 시설기준 그리고 각종의 처우계획 및 각 시설별 최소한이 공통된 처우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동복지시설에 준용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²⁸⁾

27) 국회입법조사처, 50면.

28) 준용할 수 있는 예로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를 비롯해 제8조(분리 수용), 제11조(청원) 제14조의2(보안장비의 사용), 제16조(포상), 제17조(급여품 등), 제18조(면회와 편지), 제19조(외출), 제20조(환자의 치료),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제6호 처분과 감호위탁과 제5호 처분의 통합운영

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처분의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처분은 현행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처분으로 변경이 되었다. 병원, 요양소 등의 위탁처분은 2000년 이후 매년 10여건 안팎의 처분이 있었으며, 처분이 없었던 해도 있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처분의 건수에 비하면 사실상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처분의 건수가 극히 미미하며, 특히 현재 제6호 감호위탁처분의 운영상황과 관련지어 보면, 제7호 처분의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시설위탁은 제6호 처분의 시설 및 제6호 처분과 연계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제7호 처분의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7호의 처분 중 요양소 위탁의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감호위탁 처분의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유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7호 처분의 활용 빈도 면에서나 제7호처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제6호 처분과 연계하거나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유사기능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으며, 조문의 사문화(死文化)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가족 간 유대관계의 와해와 한 자녀 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소년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은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야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기대만큼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가져주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결손가정과 학대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소년 또한 적지 않다. 또한, 형사정책에서 말하는 국민사상과 사회적 약자로서 소년을 처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관점은 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소년을 형벌로 다스리기 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년에 대해서 특별한 처우를 하는 이유는 소년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여

러 가지 생물학적·심리적 미성숙에서 그 해답을 구하는 견해도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내다 볼 때, 소년 범죄에 대하여 보호자나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 더 큰 비용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소년범죄에 대한 초기의 조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할 수 밖에는 없다. 즉 범죄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적합한 보호처분의 부과를 통한 교화개선은 소년의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게 될 더 강력하고 잔인한 제2, 제3의 범죄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은 그 조사단계에서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인적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뿐 아니라,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소년의 진정한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년법과 아동복지법상 모순되는 입법목적을 조화시키는 작업과 법률간 연령규정의 상이함으로 인해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고, 분류심사과정에 대한 인력지원 및 아동복지시설의 감호위탁 처분 대상들에게 적합하고 각 시설별로 공통되는 기본적인 처우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적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감호위탁, 보호처분, 소년범죄, 재사회화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경래, 한일 개정소년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범죄방지 한일국제학술대회, 2008.
- 김길중, 소년법 운용상의 문제점 고찰,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
- 김지선,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김혜정, 현행 소년 보호처분의 문제점, 영남법학, 2008.
- 국회입법조사처,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7호, 2010.
- 박달현,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무부·대법원의 소년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교정연구 36호, 2007.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2.
- 배종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 2002.
- 염기창, 소년보호처분의 실질적 강화방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2), 서울가정법원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 2005.
- 윤재운, 소년보호처분의 본질, 요건, 효력과 그 현황, 판례월보, 1985.
- 이수현,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5권, 2009.
- 이윤호,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이춘화,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보호(통권 제16호), 2004.
-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2002.
- 조규범, 소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수탁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08.
- 최인섭, 소년보호정책의 새로운 방향, 보호 제13호, 2001.
-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2. 외국문헌

- Harry E. Allen, Clifford E Simonsen, Edward J. Latessa, "Corrections in America : an introduction", 10th ed.. 2003.
- Philip L. Reichel, "Corrections ; Philosophies, Practices, and Procedures", 2nd ed. 2001.

3. 기타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보건복지부 인터넷 자료 참조.

[Abstract]

A study on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Lee, Soo-Hyun

Ph. D, Lecturer,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Breakdown of family ties between a child and family due to the increase in boys' and parents' interest and affection for children when compared with the past, it is true that rising. Nevertheless, the competitive position of a parent living in a society of love and care for a child who does not get enough, do not shave. Due to this social phenomenon than ever before, an increase in broken families and abused children, and also falling into the path of crime, the boy is also considerable.

Juvenile Law emphasizes the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boy and the boy as the objec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to reign with a view to investigate hoping that you can involve. This boy for special treatment why the boy for personal growth process, appearing in several biological psychological immaturity in the answers to obtain the views but also a more long-term out of view, juvenile delinquency for the protection or the state to take appropriate steps If our society come to bear a greater cost be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in the early action has only a very meaningful and can be important. That is a crime for the boy's person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imposition of appropriate correctional detention improvements for the boy's personal life as well as happy to be embraced by our society, more powerful and cruel, 2nd, 3rd and protect society from criminal acts of It is an important countermeasure is. This boy is charged for detention of the survey phase thorough preparation and adequate human and physical facilities must be prepared as well as the executive in making even the boy's a real enlightenment and re-painting for the effective practical support and the

system should be prepared.

So the boy child welfare laws and laws that contradict the purpose of harmonizing the legislation specified by law, the age difference between action and fix the problem, and discrimination in the classification process and personnel support for foster custody of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each facility is suitable for disposal by a common target Treatment of the basic legal framework, including planning for a portion shall be deemed to be a full review.

Key words : Resocialization, Juvenile Law, Detention, Custody Charged .